

제22장
최종규정

제22.1조
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22.2조
개정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
2.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의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 공한일 후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날에 발효한다.
3.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22.3조
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제22.2조에 따라 적절하게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제22.4조
추가 당사국

양 당사국은 국가 또는 국가집단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도록 권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 참여의 조건은 각 당사국과 추가 국가 또는 국가집단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승인을 조건으로, 양 당사국과 권유 받은 국가 또는 국가집단 간에 합의된다.

제22.5조

발효 및 종료

1.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 공한일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외교 공한의 교환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2.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외교 공한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.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그러한 통보의 접수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3.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내에,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서 규정된 날 후 종료되어야 할 이 협정의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 협의는 당사국이 자신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내에 개시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21년 5월 12일, 히브리력으로는 5781년 Sivan월 1일,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,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 해석상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